

CJ, 배합사료 포장에 상표권 횡포

제일사료, CJ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상 피해 막대

제일사료가 “배합사료 포장에 CJ라는 상표를 사용해 자사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CJ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9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제일사료는 “CJ가 배합사료 등의 포장에 <CJ>를 무단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배합사료제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상표가 부착된 배합사료의 판매와 광고 등에 대한 상표소유권과 제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사의 허락 없이 누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일사료는 1996년 12월 특허청에 참깨, 고구마, 과실, 통조림, 두부, 국수, 누룩, 연기름, 배합사료, 원예용 종자, 포도 등의 품목에 대해 <C.J> 상표를 등록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한편, CJ는 감자, 사탕수수, 곡물, 배합사료 등 24개 품목에 대해 2002년 9월 <CJ> 상표를 출원했다가 제일사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004년 2월13일 거절당했으나 양돈용 배합사료의 신문광고와 홈페이지 등에 CJ 표장을 사용해 왔다.

<화학저널 2004/09/09>